

의안 번호	855
----------	-----

울산광역시중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1. 검토경과

- 제안연월일 : 2011. 11. 04(금)
- 제안자 : 김지근 의원 외 9명
- 위원회회부 : 2011. 11. 16(수)
- 위원회심사 : 2011. 11. 22(화)

2. 제안이유

- 「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의 인권보장에 관한 제도와 정책, 적극적인 조치를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지역사회에서 구현하기 위함

3. 주요내용

-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목적과 정의(안제1조및제2조)
-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에 대한 모든 차별방지와 차별받는 장애인 구제, 장애인 인권침해 해소를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, 장애인 편의를 위한 기술·행정·재정적 지원 등 구청장의 책무(안 제3조)
- 5년마다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수립 및 매년 시행계획 수립(안 제5조, 제7조)
- 구 및 소속기관, 장애인 및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종사자, 사업주 등 구민을 대상으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증진, 권리구제 등에 관하여 교육 및 홍보실시(안 제9조, 제10조)
-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자문·심의를 위한 위원회를

두며, 위원회 구성, 위원회 기능, 위원의 임기, 회의규정, 수당과
여비지급 등 규정(안 제11조, 12조, 13조, 14조, 15조, 18조)

4. 근거법령

- 「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

5. 검토의견

-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김지근 의원을 비롯한 10명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의 인권보장에 관한 제도와 정책, 조치할 사항 등을 규정한 것으로
- 주요 내용을 보면,
 -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과 인권보장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와 장애인의 권리와 구민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
 -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기본계획수립 및 시행계획 등을 규정하고
 - 구 및 소속기관, 장애인 관련 종사자, 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증진에 관한 교육 및 홍보실시를 규정하였으며
 -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자문 및 심의를 위한 위원 설치 운영을 규정한 것으로
- 장애인 아동 성폭력을 다룬 영화 “도가니” 계기로 사회적인 약자인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과 인권보장이 절실히 요구됨으로 원안의결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됨.